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7월 30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16일, 검단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7월 20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7. 3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계약기간 만료(2026년 12월 2일)됨에 따라, 아동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여 공백 없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 대상: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소재지: 검단구 가현로 41, 1층 대원레스피아 아파트)
- 시설 현황: 면적 74.5㎡, 정원 20명, 종사자 2명
- 위탁 기간: 5년 [2026년 12월 3일 ~ 2031년 12월 2일] (기존 위탁기간: 2021. 12. 3. ~ 2026. 12. 2.)
- 기존 수탁기관: 인천방과후사회적협동조합
- 위탁운영 주요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및 평가·모니터링
 - 돌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이용아동 모집·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건강·급간식·위생·안전관리
 - 학부모 상담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 수탁자 선정 방식: 기존 법인 대상 재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하며, 8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신규 선정

3. 사무과장(직무대리)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직무대리) : 정홍선】

-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절차로 판단되며, 특별한 법적·행정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서로이음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7월 30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16일, 검단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7월 20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7. 3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법인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2026. 11. 30.)에 따라, 현 위탁기관이 피해 아동 보호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쉼터 운영 역량을 갖추었는지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위탁계약 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아동 보호·치유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탁사무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위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 기간: 5년 (2026. 12. 1. ~ 2031. 11. 30.)
- 대상시설 현황: 1개소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 마전동 영남탑스빌아파트 101동 1202호, 면적 119.94㎡, 정원 7명, 종사자 3명)
- 기존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 (위탁 기간: 2021.12.1. ~ 2026.11.30.)
- 수탁기관 결정 방법: 기존 법인을 대상으로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80점 미만인 경우 공개 모집 후 신규 수탁기관 선정

3. 사무과장(직무대리)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직무대리) : 정홍선】

- 본 민간 위탁 동의안은 보호가 시급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신 회복·치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후속 절차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이행하려는 사안이므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아동 인권 보호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사무이므로 “**원안 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7월 30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16일, 검단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2026년 7월 20일 위원회 회부
- 다. 상 정 일 자: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7. 3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식품위생과장】

1) 제안이유

- 현행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급식 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 수탁기관 자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방법: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
- 위탁사무: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 사무과장(직무대리)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직무대리) : 정홍선】

- 본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집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임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및 위탁 방법 등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